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구축방안

이 상 원*

< 목 차 >

I. 서 론	IV. 민간경비 관련 경찰업무와 운영실태
II.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역할	1. 방법경찰의 업무와 조직
1. 공경비의 역할	2. 민간경비관련 경찰의 개혁노력과 운영실태
2. 민간경비의 역할	V. 문제점과 협력방법체제 구축방안
III. 한국민간경비산업의 실태	1. 문제점
1. 민간경비 일반현황	2. 협력방법체제 구축방안
2. 기능별 현황분석	VI. 결 론

I. 서 론

우리 사회가 21C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의 전 부문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의 기능분화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속에서 범죄 역시 광역화, 초스피드화, 조직화, 복잡화, 하이테크화 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등 첨단 신종 범죄가 증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¹⁾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안전의 욕구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시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불안 현상은 각종사회통계 자료 등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려할 정도를 지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²⁾. 이러한 사회 안전의 부재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 즉, 범죄, 테러 등 각종 위해 행위의 증가와 함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소극적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C를 살아오면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범죄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경찰

*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1) 경찰청, 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2000, p.26.

2) 이윤근, "한국 민간 경비산업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미나 발표자료(2000,12), p.2.

의 문제일 뿐이라고 인식되어진 시대가 있었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민간경비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³⁾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교육수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이나 치안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인이며, 경찰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자각과 이에 대한 요구, 경찰의 역할인식 및 태도변화로 인해 경찰에 대한 역할의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이 처한 여건과 환경 및 매년 증가하는 범죄율에 비추어 볼 때 치안력은 사회발전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경찰은 과중한 업무량, 예산의 부족, 장비 및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⁴⁾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효율적인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부의 기능만으로 범죄예방활동이 완벽히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민간경비제도를 통해 경찰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행하며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맞추어 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안전, 범죄예방활동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통계분석과 각종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II. 공경비(경찰)와 민간경비의 역할

1. 공경비(경찰)의 역할

공경비는 공경찰(Public police) 또는 경찰(police)이라 불린다. 공경찰 이외에 민간경찰(Private police)로 불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가 있다. 각 분야에서 양자는 공통점이 많고 실제 활동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⁵⁾.

전통적으로 범죄통제, 질서유지를 경찰의 역할이라고 인식되어져 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3) Harvey Burstein, *Introduction to Security*(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94), p.11.

4) 장대홍,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새로운 경향", 한국 민간경비학회 제2회 국제학술 세미나(2001.6), p.30.

5) 경찰대학, 「비교 경찰론」(서울: 경인종합인쇄, 1999), p.125.

1) 범죄통제

경찰의 핵심임무는 범죄통제이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범죄통제 임무에는 범죄예방행위는 물론이고 법집행, 범죄자 체포, 수사에 관한 절차가 포함된다.

2) 질서유지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경찰의 활동 중 어느면 보다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질서유지이다. 이것은 공공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한다든지, 싸움을 종식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 하게 유지케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무질서하거나 잠재적인 무질서 활동에 대한 질서회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행위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법집행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

3) 봉사

경찰은 다른 어느 공무원 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는 순찰, 수사, 교통통제, 무질서를 예방하는 다른 어느 경찰직무와 외면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긴급 구조 업무를 제공한다던가 교통사고 업무, 잠긴차량의 문을 열어 준다던가, 난처하게 된 사람을 돕는데 제공되는 일들이 봉사와 관련된 일상적 업무들이다.

4) 기타업무

위에서 세가지 외에 다른 경찰의 역할들이 정보수집,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들이다.

현대 경찰은 과거의 소극적 기능 즉, 집행위주의 전통적 경찰활동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6) 이상원, "미국 도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2호(1999.3), pp.126-127 참조.

7) Thomas Baker, Ronald D. Hunter, Jeffery P. Rush, *Police System and Practice : An Introduction*(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94), p.95.

이유에서 선진경찰을 비롯한 한국경찰도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집행 및 질서유지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비범죄업무 분야 즉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범죄의 예방,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인명과 재산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교통의 규제, 그 외 여러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경찰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순찰활동과 수사활동이다 .

이상과 같은 경찰의 역할에 관해 2가지 형태의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첫째가 프로페셔널 모델과 서비스 모델이 그것이다⁸⁾

프로페셔널 모델은 경찰의 범죄통제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나 활동중에서 비범죄업무를 줄임으로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찰활동의 서비스 모델에서는, 법집행은 경찰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업무(서비스나 비범죄업무)도 중요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 모델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으로 불리는 접근법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이외의 그룹과의 동반자 관계가 효과적인 범죄예방에 불가결한 것이란 것은 의미한다.

2. 민간경비의 역할

1) 민간경비의 정의와 역할

민간경비는 공경비(경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고객의 재산손실을 막아주고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업무⁹⁾를 말하는데, 고객들의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보호하며 법 집행적 측면보다는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¹⁰⁾

현대 민간경비산업을 특징짓기 위해 민간경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내려졌는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¹¹⁾.

첫째, 다양한 위험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인 고객으

8) 伊藤康一郎譯, 民間セキュリティの動向(東京: 双文社, 1991), p.113.

9) Peter S. Hopf, *Handbook of Building Security-Planning and Design*(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McGraw-Hill Inc., 1979), p.3.

10) Harvey Burstein, *Security : Management Perspective*(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96), p.5.

11) Kören M. Hess and Henry M. Wroblewski,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St. Paul, MN : West Publishing Co., 1996), p.29.

로부터 받는 보수에 따른 경비관련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단체 및 영리기업을 말한다.

둘째,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수사, 경비, 순찰, 거짓말 탐지기, 경보, 무장호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경비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범죄는 조직에 있어서 손해를 일으키는 많은 위험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

노만 보턴(Norman Botton)과 존 코스타노스키(John Kostanoski)는 WACUP라는 머릿글자로 지칭한 것과 같이 민간경비는 넓게 범죄를 포함한 5개 유형의 위협을 통제하려고 하였다¹²⁾. 즉 낭비(Waste), 사고(Accident), 에러(Error), 범죄(Crime), 비윤리적 활동(Unethical Practices)이다.

민간경비 특별위원회(PSIF)의 보고서에는 민간경비와 경찰의 직무가 <표2-1>와 같은 연속대로서 그려지고 있다. PSIF는 양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있다.

<표2-1> 경비의 연속대

민간경비	시큐리티시스템	공경비
고객 범죄의 예방 특정기업 영리기업 손실감축/자산보호	경비업무투입 역할/기능 경비대상 운영조직(공급시스템) 투입결과	시민 범죄의대응 일반대상 정부 법집행/체포

자료 : William C. Cunningham and Clifford W. Van Meter, *The Hall Crest Report II : Private Security Trend 1970 to 2000*(Boston, MA : Butterworth-Heinemann, 1990), p.116.

- ① 경비업무투입 :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체(일반시민인가, 고객인가)
- ② 역할 또는 기능 : 주요한 활동이나 목적(범죄의 발생에 대응하는 것인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인가)

12) 伊藤康一郎, 前掲書, p.119.

- ③ 경비대상 : 서비스를 받는 수익자나 대상자(일반시민인가, 특정고객인가)
- ④ 운영조직 :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구(정부인가, 영리기업인가)
- ⑤ 투입결과 : 공급된 서비스의 최종결과(법집행/범죄자 체포인가, 손실감축자산보호인가)

2) 민간경비의 임무와 기능

민간경비는 일반적으로 경비, 순찰, 거짓발견, 경비수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 관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민간조직과 개인을 포함하는 것이다¹³⁾.

<표2-2> 민간경비의 임무

상주경비관리자	계약경비관리자
1. 생명과 재산의 보호	1. 생명과 재산의 보호
2. 범죄예방	2. 범죄예방
3. 손실예방	3. 손실예방
4. 화재방지	4. 화재방지
5. 출입통제	5. 출입통제
6. 범죄수사	6. 범죄수사
7. 직원신분 확인	7. 직원신분 확인
8. 질서유지	8. 범죄통보
9. 체포, 고소·고발	9. 체포, 고소·고발
10. 사고방지	10. 정보보호
11. 범죄통보	11. 범죄수사
12. 정보보호	12. 사고방지
13. 교통통제	13. 교통통제

출처 : William C. Cuning and Others, The Hall Crest Report II, 1990, p.120.

민간경비분야에서 보는 자기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손실, 화재의 예방이라고 보는데 비해 경찰분야에서는 기본적 임무로써 범죄의 통제라고 여기고 있다¹⁴⁾

민간경비의 관리자들에 의해 평가된 민간경비의 임무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손실예방, 화재방지, 출입통제, 범죄수사, 직원신분확인, 질서유지, 체포와 고소·고발, 사고

13) 上掲書, p.128.

14) 上掲書, p.125.

방지, 범죄통보, 정보보호, 교통통제이다.

3)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는 1950년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1960년대 초에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한국업체들이 전담하면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기업체에서 민간 경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시설, 국영기업체, 산업공단 등에 대한 경비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민간 경비회사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민간경비산업은 1973년 청원경찰법,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1978년 한국경비협회의 결성과 더불어 성장단계에 들어섰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 등의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를 치름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001년부터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전문화,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래 청원 경찰이 전담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민간경비원도 수행 가능토록한 특수경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민간경비영역이 확대되고 민간경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의 5가지의 업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15) 경비업법 제2조.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5) 특수경비업무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우리나라에서는 변화하는 경비환경에 부응하고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경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¹⁶⁾.

Ⅲ.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

1. 민간경비 일반현황

1) 민간경비현황

한국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제정되어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될 당시 불과 10개 밖에 되지 않았던 업체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1995년 785개의 경비업체와 44,720명의 경비원이 있었지만, 2000년에는 1,882개의 경비업체와 81,618명, 2002년에는 2,022개의 업체와 97,656명의 경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3-1> 민간경비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경비업체	320	420	539	690	785	975	1,151	1,375	1,707	1,882
경비원	29,000	31,341	37,607	40,223	44,720	52,489	62,419	52,343	71,481	81,618

자료 : 방범국 내부자료, 2002.

16)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

2) 대상시설별 현황

민간경비의 대상시설별 현황을 보면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28,378명으로, 관리업체수가 4,426개이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8,126명으로 관리업체수가 4,020개로 나타났다.

민간경비업체들이 개인이나 일반시설물 경비 위주에서 벗어나서 외국기관, 국가기관, 항만, 공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민간경비업도 점점 전문성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표3-2> 대상시설별 현황 (2000.12.31기준)

시설별	구분	인력경비		기계경비
		경비원수	관리업체수	가입자수
국가기관		637	118	
외국기관		1,913	42	
국영기업체		2,505	251	
산업시설		28,378	4,426	87,393
금융기관		8,126	4,020	50,604
언론기관		689	79	
교육시설		2,857	380	35,435
공항		2,125	30	
항만		275	26	
빌딩		15,940	2,015	26,345
APT 주택		10,341	141	87,056
백화점, 상가		3,648	432	123,285
정유시설		348	136	
기타		3,177	487	56,007
계		80,959	12,583	466,125

자료 : 한국경비협회, 총무부, 2000.

기계경비도 가입자수에 있어서 산업시설(87,393명), 금융기관(50,604명), 교육시설(35,435명), 빌딩(26,345명) 등 모든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3) 허가업종별 현황

허가업종별 현황에서 전체 2,906개 업체에서 시설경비업무가 1,509개소로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송경비업무가 787개소로 27%, 신변보호업무가 63개소(2.1%), 기계경비업무

가 87개소(2.9%) 순 이었다. <표3-3>에서 알 수 있듯이 약 79%가 시설경비업무와 호송경비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경비가 다양화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3-3> 허가업종별 현황 (2000.12.31 기준)

경비형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	계
경비업체수 (%)	1,509 (51.9%)	787 (27%)	63 (2.1%)	87 (2.9%)	2,906 (100%)

자료 : 한국경비협회 총무부, 2000.

4) 인원별 현황

<표3-4>의 인원별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515개의 업체중 경비원이 총 20명이 안되는 업체가 781개소, 21-50명의 업체가 424개소, 51-100명의 업체가 177명, 101-200명의 업체가 83개소 200-300명의 업체가 14개소 등이었다. 경비원 200명 이하의 업체가 대부분인 것은 바로 민간경비산업의 영세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4> 인원별 현황 (2000.12.31 기준)

경비원수	계	1-20	21-50	51-100	101-200	201-300
업체수	1515	781	424	177	83	14
경비원수	401-500	501-600	601-700	701-1000	1001-1500	1501이상
업체수	7	2	3	5	2	5

자료 : 한국경비협회 총무부, 2000.

2. 기능별 현황분석

1) 시설경비의 예

D업체는 지방소재 회사로서 199명의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D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D사의 근무자 연령별 현황

<표3-5> D사의 근무자 연령별 현황 (2001. 현재)

연령 \ 구분	명(%)	비고
29세 이하	0명(0%)	
30-39세	0명(0%)	
40세-49세	2명(1%)	
50세-59세	22명(11%)	
60세 이상	175명(88%)	
계(명)	199명(100%)	

자료 : D업체 내부자료

D사의 근무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9세 이하의 근무자는 전무한 실정이고 50-59세의 근무자가 22명으로 11%, 60세 이상의 근무자가 175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현실을 알 수 있다.

(2) D사 근무자의 학력별 현황과 보수

D사 근무자의 학력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중졸자가 78명으로 39%, 고졸자가 42명으로 21%, 전문대 졸업자가 25명으로 13%, 초등학교 졸업자가 26명으로 13%, 대졸자가 20명으로 10%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보수는 경비근무자가 70만원선, 반장급이 75만원선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경비원의 55%가 8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9~12시간 이고 경비업체의 영업기간이 8년 이하의 업체가 60.4%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7) 강길훈,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1999, pp.93-95.

<표3-6> D사 근무자의 학력별 현황과 보수 (2001.현재)

구분 \ 학력	명(%)	비고
무취학	8명(4%)	
초등학교졸	26명(13%)	
중졸	78(39%)	
고졸	42명(21%)	
전문대졸	25명(13%)	
대졸	20명(10%)	

자료 : D업체 내부자료

2) 기계경비의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규모가 큰 기계경비 업체 중의 하나인 C사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근무자는 서울근무 기계경비 대치요원이다.

(1) C사의 근무자 연령별 현황

C사는 전문기계 경비업체로서 298명의 대치요원 중 21-30세가 241명으로 전체요원의 81%를 31-40세가 57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C사는 다른 중소경비업체에 비교해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7> C사의 근무자 연령별 현황 (2001.현재)

구분 \ 연령	명(%)	
20대 이하	0명(0%)	
21세-30세	241명(81%)	
31세-40세	57명(19%)	
계(명)	298명(100%)	

자료 : C사 내부자료

(2) C사의 근무자 학력별 현황

C사의 학력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고졸자가 238명(80%), 전문대 졸업자가 44명(15%), 대졸자가 15명(5%), 대학원 졸업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8> C사의 근무자 학력별 현황 (2001. 현재)

구분 \ 학력	명(%)	비고
고졸	238명(80%)	
전문대졸	44명(15%)	
대졸	15명(5%)	
대학원졸	1명(0%)	
계	298명(100%)	

자료 : C사 내부자료

(3) C사의 인건비 현황

C사의 경비근무자 인건비는 6급(고졸자) 1,500,000원부터 주임 1,800,000원, 대리 2,100,000원으로 직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표3-9> C사의 인건비 현황 (2001. 현재)

직급별 \ 인건비	인건비				
	6급(고졸)	5급(전문대졸)	4급(대졸)	주임	대리
인건비	1,500,000원	1,600,000원	1,700,000원	1,800,000원	2,100,000원

자료 : C사 내부자료

3) 특수경비의 예

(1) 연령별 현황

A사는 중요지역의 내곽을 담당하는 민간 경비회사로 이들은 중요시설경비, 체포술 권총·사격 등의 특수교육 80시간을 수료한 후 국가 중요시설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이다. 특수경비 근무자들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테러사건이 발생했을때에는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하게 된다. A사의 경비근무자는 총 353명으로 이들의 연령은 20세 이하가 1명(0.3%), 21-30세가 240으로 68%, 31-40세가 103명으로 29%, 41세 이상이 9명으로 2.5%를 나타내고 있다.

B사는 중요지역의 외곽을 담당하는 민간경비회사이다. B사의 경비근무자는 총 225명으로 이들의 연령은 20세 이하가 2명(0.9%), 21~30세가 96명(42.7%), 31~40세가 76명(33.8%), 41세 이상이 51명으로 22.7%로 나타나고 있다.

<표3-10> 연령별 현황 (2001. 현재)

구분 \ 연령	A사	B사
20세 이하	1명(0.3%)	2명(0.9%)
21-30세	240명(68%)	96명(42.7%)
31-40세	103명(29%)	76명(33.8%)
41세 이상	9명(2.5%)	51명(22.7%)
계(명)	353명(100%)	225명(100%)

자료 : A·B사 내부자료

(2) 학력별 현황

<표3-11> 학력별 현황 (2001. 현재)

구분 \ 학력	A사	B사
고졸	234명(66.2%)	153명(68%)
전문대졸	65명(18.4%)	23명(10.3%)
대졸	52명(14.7%)	40명(17.8%)
대학원졸	2명(0.6%)	4명(1.8%)
계	353명(100%)	225명(100%)

자료 : A·B사 내부자료

A사 경비근무자의 학력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고졸자가 234명으로 66.2%로 제일 많았고, 전문대 졸업자가 65명으로 18.4%, 대졸자가 52명으로 14.7%, 대학원 졸업자가 2명으로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비근무자는 고졸자가 153명으로 68%, 전문대졸업자가 23명으로 10.3%, 대졸자가 40명으로 17.8%, 대학원 졸업자가 4명으로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건비 현황

A사의 경비근무자 인건비는 일반경비원이 1,374,293원이고 조장급이 1,657,420원, 반장이 1,851,904원, 대장이 2,365,455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비근무자 인건비 역시 A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2> 인건비 현황 (2001. 현재)

직급별 인건비	인건비				비고
	경비원	조장	반장	대장	
인건비	1,374,293원	1,657,420원	1,851,904원	2,364,455원	상여, 수당, 퇴직금 포함

자료 : A·B사 내부자료

4) 교육현황

민간 경비원에 대한 교육으로는,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경비원에게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입교육을 받게 해야¹⁸⁾하고 또 소속 경비원에 대해 매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¹⁹⁾.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은 15시간으로(경비업법 시행 규칙 제12조)서, 학과교육은 헌법 및 형사법(2시간), 경비업법(2시간), 실무교육으로는 시설방호(2시간), 불심검문요령(2시간), 소방(2시간)이 있고, 무술교육으로 기본훈련과 호신술(2시간), 기타(입교식, 평가, 수료식)가 3시간이다.

18) 경비업법 제 13조 제1항.

19)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표3-13>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 및 시간

구분	과목	시간
정신교육	· 정신교육	4
학과교육	· 헌법 및 형사법	4
	· 경비업법	8
	· 민간 경비론	2
실무교육	· 기계경비실무	4
	· 경찰관 직무집행법	4
	· 시설경비(야간경비포함)	6
	· 소방	4
	· 정보보호	2
	· 보안업무	4
	· 민방공	6
	· 총기조작	2
	· 총검술	4
	· 사격	12
· 예절	2	
무술교육	· 총포술 및 호신술	8
기타	· 입교식, 수료식, 평가 등	4
계		80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으로는,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정을 이수케 해야 하고²⁰⁾ 또 소속 경비원에 대해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²¹⁾.

특수 경비원 신입교육은 80시간으로서²²⁾ 과목 및 시간은 <표3-13>과 같다.

20) 경비업법 제13조 제2항.

21)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IV. 민간경비 관련 경찰업무와 운영실태

1. 방범경찰의 업무와 조직

1) 경찰청

경찰청의 방범업무 담당부서는 방범국이다. 방범국은 방범기획과와 방범지도과 및 여성청소년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에는 여러개의 담당계를 두고 있다. 경찰청 직제에서 방범경찰의 업무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²³⁾.

(1) 방범기획과 업무²⁴⁾

가) 방범기획 업무

방범기획계 업무로는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기타 방범국내 서무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다.

나) 외근업무

외근 업무로는 파출소 외근업무에 관한 기획, 지하철 수사대, 산악구조대, 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2제도 발전 계획 수립·운영 및 조정, 112제도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112 신고센터 운영지도 등이다.

다) 협력방범업무

협력방범업무로는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경비업 관련 업무 등이다.

(2) 방범지도과 업무²⁵⁾

가) 지도업무

지도업무로는 풍속사범의 지도단속에 관한 기획, 사행 행위 지도단속,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즉결심판 업무의 지도, 경범 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유실물 처리 업무의 지

23)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2001.5.23), 훈령 제354호.

24)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25)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도,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등이다.

나) 총포관리화약 업무

총포관리 화약업무로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 총격기 등 허가 및 지도단속, 화약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 수렵총기 안전관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폭발물 안전관리,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지도 등이다.

(3) 여성청소년과 업무

가) 여성청소년 기획업무

여성청소년 기획업무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치안대책수립, 성희롱 예방·여성범죄 대책요령등 여성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기획 및 관리, 경찰내 여성공무원 고충 상담실 운영 지도, 여경 권익 향상, 여성청소년과 서무 업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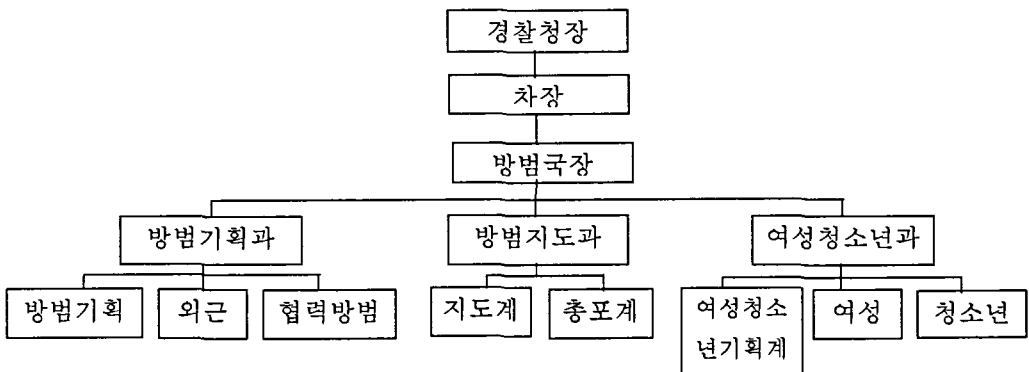
나) 여성업무

대여성 범죄단속지도 및 통계분석, 여경기동수사반 운영지도, 대여성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연구 및 예방활동, 성폭력·가정폭력·윤락행위·아동학대 등 여성상담실 운영 등이다.

다) 청소년 업무

소년경찰에 관한 주요 계획·연구,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지도·조사, 소년범죄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지도, 청소년 단체의 지도·감독, 청소년 유해환경 단소의 지도 등이다.

<표4-1> 경찰청의 방법조직



2) 지방경찰청

지방 경찰청에서 방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방법부가 있고 기타 지방경찰청에는 방법과가 있으며 그 밑에 여러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지방경찰청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과의 업무를 대구지방경찰청의 업무²⁶⁾를 예로 들고자 한다.

방법과에는 방법기획계, 방법지도계, 여성청소년계를 두고 있다²⁷⁾.

(1) 방법기획계 업무

방법기획계 업무로는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지도, 방법순찰대 운영지도, 파출소의근업무의 기획 및 지도교양, 용역경비에 관한 지도, 감독 파출소 운영의 지도·개선, 주민 협력 치안업무, 112 범죄신고 센터 운영 및 지령업무,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지령, 출동지령, 확인 및 기동차량 근무확인, 기타 지령업무에 관한 사항, 과내서무, 사람·차량조회, 기타 18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다.

(2) 방법지도계 업무

방법지도계 업무로는 총포·도검·화약분사기·전자 충격기 제조업 허가·수출입 허가·판매업 허가, 단속 및 지도감독, 안전 관리지도, 불법무기류 및 폭발물 처리, 안전검측 업무, 즉결 심판청구 업무의 지도,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의 보호조치 업무의 지도, 유실물 처리지도, 행락질서에 관한 지도 단속, 풍속사범에관한 기획 및 지도단속, 산림보호단속의 협조, 사행행위 등 규제에 관한 계획 및 지도단속,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지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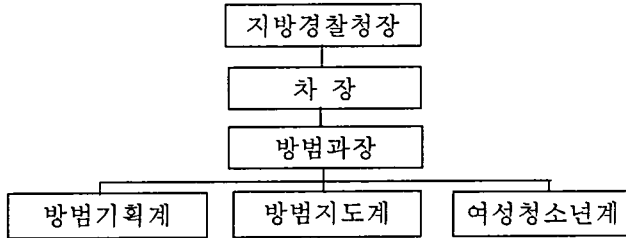
(3) 여성청소년계 업무

여성청소년계 업무로는 소년 경찰에 관한 계획지도 및 소년범죄예방대책, 미아·가출인의 업무계획 및 지도감독, 소년보호 및 계도에 관한사항, 청소년 단체의 지도감독, 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운영지도, 여성과년 업무처리 및 관리, 여성상담실 운영 및 지도, 여성기동수사반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등이다.

26)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1999.7.26), 훈령 제 75호.

27)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0조.

<표4-2> 지방경찰청 방법조직의 예



- * 서울지방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 조직과 유사하며 방법국 대신에 방법부를 두고 있다.
- * 강원지방 경찰청의 경우 방법과에 방법기획계와 방법지도계를 두고 있다.

3) 경찰서

경찰서의 방법과는 방법계, 방법지도계, 소년계로 구성된다. 소년계가 없는 경찰서는 방법지도계의 소년 담당 경찰관이 소년업무를 담당한다.

일선에서 방법활동을 수행하는 부서가 방법과와 파출소이다.

방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서울의 경찰서의 예를 들고자 한다²⁸⁾.

(1) 방법계 업무

방법계 업무로는 외근 업무 계획, 조정 및 지도·감독, 방법업무 계획 및 지도, 파출소 외근경찰관의 배치 및 이동발령, 파출소 외근 경찰관 동원·표창 제정, 외근 경찰관 교양·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2 순찰차 및 방법싸이카 운영, 방법을 위한 가택방문지도, 파출소 시달 문서 조정통제, 경비업관련 지도단속, 산악안전에 관한 사항(복구, 도봉), 기타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방법지도계 업무

방법지도계 업무로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의 제조·수출입 허가 관련·제조판매·소지사용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및 처리, 사격 및 사격장 관련 위반 행위단속, 즉결 심판청구 및 관련 업무, 벌과금 장수 납입,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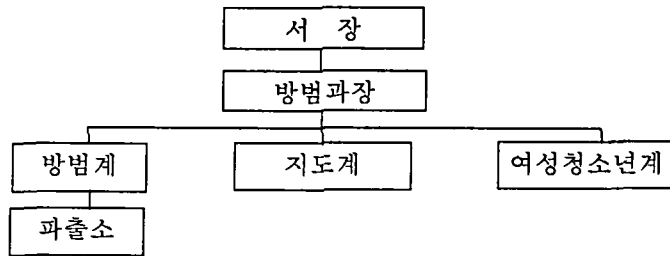
2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2000.5.9), 훈령 제146호, 제 28조.

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업무, 유실물처리, 산림보호단속의 협조, 안전검측업무, 행락 질서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단속, 풍속사범관련 계획 수립 시행 및 단속, 사행행위 등 규제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단속,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등이다.

(3) 여성청소년계 업무

여성청소년계 업무로는 소년선도 업무, 소년 경찰업무 계획 및 지도, 비행소년 및 불량행위 소년의 지도 단속, 미아·가출인의 보호 및 수배, 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 지도 단속, 청소년 단체의 지도 육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실태파악 지도 단속, 소년범죄 수사처리, 여성관련 업무처리, 여성 상담실 운영 및 대여성 범죄 수사 등이다.

<표4-3> 경찰서 방법조직의 예



*경찰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

2. 민간경비관련 경찰의 개혁노력과 운영실태

1) 경찰의 개혁노력

(1) 경찰대개혁 과제 분석

현대사회의 대변화와 경찰기능의 변화요청에 부응하고 21C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하에서 그 동안 경찰이 권위주의와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새 시대에는 독자자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신뢰와 새로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 9일까지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추진하였다²⁹⁾. 이후 100일 작전 종료를 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

하여 2002년을 개혁 완수의 해로 정하고 단계별(4단계)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개혁의 전략은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대명제와 개혁을 하지 않고는 경찰 조직이 생존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을 깨닫고 자율과 창의와 책임의 제2의 경찰을 창설한다는 정신으로 총체적인 변혁을 추진하는 것이다³⁰⁾.

이것은 과거의 타율적인 근무자세로부터 자율적인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것이다.

1999년 12월 1일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 선포식이 있는 후 개혁추진 회의와 의식개혁 교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였다.

<표4-4> 기능별 개혁과제 현황

구분	조직관리			치안활동		대민 서비스	
	기강확립	인사관리	근무여건 선진화	민생치안 강화	사회안정 확보	경찰이미지 개선	민원행정 개선
총221개	16	26	92	25	6	19	37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완료된 총 221개 과제 중 조직 관리가 전체 60.6%로 가장 많았고 대민서비스가 25.3%이고, 치안활동이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 보면, 경비교통이 32.1%이고 방법이 17.6%, 경무기획이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29) 1999년 12월 1일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시작하였다.

30) 이상원, “경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대응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8집 2호(2000.12), p.5.

<표4-5> 분야별 개혁과제 현황

구분	계	경무 기획	방법	수사	경비 교통	공보	감사	정보 통신	외사	총무
계	221	35	39	20	71	5	11	12	6	22
조직 관리	134	35	23	8	30	-	11	12	1	14
치안 활동	31	-	6	10	11	-	-	-	4	-
대민 서비스	56	-	10	2	30	5	-	-	1	8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조직관리, 치안활동, 대민서비스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조직관리 중 기강확립이 16개, 인사관리가 26개, 근무여건 선진화가 92개였다.

치안활동으로서 민생치안강화가 25개, 사회안정확보가 6개였고, 대민서비스 분야를 경찰이 미지개선이 19개, 민원행정개선이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단계별 개혁과제 현황

국·관 완료시한	계	경무 기획	방법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공보	감사	정보 통신	외사	총무
계	140	47	17	21	27	2	1	3	3	7	7	5
2단계 (2000.7~12월)	70	23	12	12	8	2	-	3	3	2	1	4
3단계 (2001.1~12월)	46	14	5	7	11	-	1	-	-	5	2	1
4단계 (2002.1~12월)	24	10	-	2	8	-	-	-	-	-	4	-

자료 : 경찰청, 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2000, p.50.

2002년까지의 단계별 개혁과제 140개중 2단계 과제가 70개, 3단계 과제가 46개, 4단계 과제가 24개이다³¹⁾. 이중 방법에 관련된 과제가 2단계가 12개, 3단계가 5개이다. 3단계 개혁

31) 경찰청, 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2000, p.50참조.

과제중 23개가 주민 만족치안을 구현키 위한 과제이다. 여기에는 범칙금 납부 이행 확보, 파출소에 최우수 직원배치 및 자부심고취, 민간 경비 활성화,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 장치설치 확대, 범죄분석 예측시스템 활용극대화, 광역·원격·기동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체제 구축, 전문수사관 양성, 대민부서 전·의경의 경찰관대체, 첨단 현장 활동 장비 보급확대, 파출소 장비보강 종합계획 수립·우선확보 등이다.

민간 경비활성화의 내용에는 민간경비 관리부서 신설(협력방법계), 민간경비업 육성 및 체계적 관리, 민간경비발전 협의회 운영내실화이다.

2) 일선 경찰서 운영실태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면서 이에 따른 치안수요도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시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중의 하나가 민간경비로서, 민간경비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와 근래에 와서는 경찰치안 활동의 보조자로서 상호협력·보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민간경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바, 구성원은 총 12명으로써 위원장은 방법국장이 맡고 있고 위원은 경찰에서 1인(방법기획과장), 경비협회에서 1인(사무총장), 경비업체에서 9인, 학계에서 3인이 된다.³²⁾ 민간경비 발전협의회는 2000년 4.21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2. 7. 10. 까지 총 7회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³³⁾ 토의내용으로는 경비업법개정(겸업금지의무 개정관련),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정례화 검토(산업인력공단 위탁 등), 기계 경비업체 FTX 실시협의, 경비원 노사분규현장 개입방지 방안, 경비원 자격검증제도 도입, 2002년 한일 월드컵 행사시 민간경비의 역할 등이다. 민간경비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경비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경찰청 단위에는 이러한 협의기구가 구성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서 단위에서는 방법과의 방법계소속 경찰관 1명이 경비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비업담당 경찰관은 분기별 1회 관내의 경비업체를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년 4회) 지도·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감독

32) 경찰청 내부자료.

33)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서의 경비업 담당 경찰관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 경비원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 ①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경비장소에 배치한 후 1개월 내에 실시하는지의 여부
- ②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은 배치하기 전 까지 실시하는 지의 여부(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기간에는 입회·지도 감독해야 함)
- ③ 일반경비원은 월 4시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지의 여부
- ④ 특수경비원은 월 6시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³⁴⁾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³⁵⁾.

(2)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여부

시설, 호송, 기계 경비에서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배치후 3일내, 폐지후 3일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계 경비출동요원에 대한 배치신고는 그 출동요원에 대해 직접근무 감독·교육시키는 출장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야 한다.

신변보호, 행사장 등의 혼잡경비에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이며 특수경비의 경우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경비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과태료³⁶⁾가 부과된다.

(3) 법인체 허가 사항 변경신고

신규허가 접수는 지방경찰청 방법기획계에서 하고 이것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로 내려 보낸다. 경찰서에서 실사, 조사보고(허가조건, 인력확보 등 구비 여부)후 허가가 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한다.

경비업체에서는 경찰기관에 신고 없이 경비업무나 허가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경비업체에서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 내용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7일 이내 신고),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34) 경비업법 제 19조 제1항 제7호.

35) 제1차는 경고, 제2차는 경고, 3차 처분으로서 영업정지 1월이다.

36) 신고 2월 이내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100만원, 6월 초과 12월 이내 기간경과 200만원, 12월 초과기간경과 300만원이 부과됨.

변경(15일), 법인주사무소의 출장소 신설, 이전 또는 폐지(15일),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 시설을 신설·이전·폐지한 때(15일), 특수경비업무개시나 종료한 때(15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15일)이다. 상기규정에 위반한 경우 경비업법 제 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³⁷⁾.

(4) 기타

이 외에도 경비지도사 선임여부, 경비지도사 자격 적정 여부, 경비원 명부비치 및 명부관리여부, 경비장구 확보여부, 경비인력 확보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³⁸⁾을 하게 되어있다.

또 담당 경찰관이 수시로 경비업체에 배치한 영업장소(근무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태를 점검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관할 구역내의 경비업체수가 많은데 비해 담당경찰관 1인으로서 적절한 지도·감독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로서 대구 S 경찰서의 경우 1명의 담당 경찰관이 관내 경비업체 40개³⁹⁾(시설경비업체 37, 기계경비업체3)를 담당하다 보니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V. 문제점 및 협력방법체제 구축 방안

1. 문제점

1)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는 민간경비라는 용어 자체가 그다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민간 경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20% 정도임⁴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계층에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자경의식이 요구되며, 이것은 시민스스로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방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경비 서비스를 활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7)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월, 3차 허가취소이다.

38) 위반시 과태료 처분받게 된다.

39) 대구 S 경찰서 내부자료.

40) 박주현, 공안행정의 민간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0, p.78.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민간경비원은 아파트경비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경비직이라는 용어자체가 낮은 직종으로 각인 되어 있다.

대학에서 민간경비과를 개설하기 못하고 경호행정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단적이 예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키 위해서 범죄와 안전 문제는 개인, 경찰, 민간경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경찰의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경비는 시대적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고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어느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민간경비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고객에 대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도 범죄의 예방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측에서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는 자신들의 역할과 고객으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범죄예방을 하는 민간경비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이다.

3) 민간경비와 관련된 범죄예방정책의 미흡

경찰은 범죄예방활동이 경찰의 업무이고 경찰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여긴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비전문가인 민간경비 근무자와 경찰이 함께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여기며,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는 상하감독관계이지 양자는 동반자 관계이고 상호보완관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경찰에서는 민간경비의 현재의 여건과 환경으로는 경찰에서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없고 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동반자로는 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찰측의 생각과 태도로 인해 민간경비와 관련된 범죄예방정책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정보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방법이 교환되지 못하고 있다.

4)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제 3장의 민간경비의 일반현황과 기능별 현황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몇 개의 대규모 경비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체들이다.

허가 업종에서는 시설경비 업무와 호송 경비업무가 약 80%에 이르고, 연령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학력에서도 고졸이하가 많은 것 또 저임금 등이 바로 우리나라 경비업체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민간경비원의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자질 및 전문성이 부족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업체의 영세성과 비 전문성으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국제 적인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협력체제 구축방안

1)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의 동반자 의식 확립

우리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기능이 복잡해지고 각종 범죄는 증가하고 치안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에 아울러 국민들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경찰이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범죄나 안전문제에서 경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민간경비인데, 민간경비원들은 경찰이 자기를 경시하고 경비업무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⁴¹⁾ 나타났는바 이러한 갈등관계는 시대적 변화상황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의 동반자로 민간경비를 인정하고 양자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에 도움이 되고 또 양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경찰서 및 지방 경찰청 단위에 민간경비전담부서 설치

제 4장의 민간경비 관련 경찰업무와 운영실태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비

41) 상계논문, p.122 참조.

업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내의 수십개의 경비업체를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할 구역내의 경비업체는 많은데 비해, 담당 경찰관 1인으로서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방법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경찰서 단위에 반이나 계단위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도 관할 구역내 100~200개 정도의 경비업체의 허가, 보안지도 점검, 행정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위나 반단위의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3) 경비업체의 협력방법 Program 개발 및 교육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와의 협력문제가 필수적 사항임에 틀림없다. 양자의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양자의 이해부족과 제도적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고 양자의 보다 나은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경비측의 적극적 협력방법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 Program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⁴²⁾.

따라서 경비협회가 주관하여 범죄예방 Program이나 협력방법 Program을 개발하여 경찰과 민간 경비요원이 함께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인적유대 발전은 물론, 양자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경비업체의 영세성 탈피와 전문화 필요

대부분의 경비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체 규모로서 출혈경쟁의 과다로 입찰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경영을 악화시키고 저임금, 저학력, 비전문적 경영관리가 되풀이됨으로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미진, 근무환경 악화로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게되고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몇 개의 대규모 경비업체에서 전체의 민간경비시장을 60%이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전체 민간경비업체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게 된다.

42) *Minutes of The Joint Council of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Associations*(Chicago, IL :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1986), pp.4-6.

대규모 경비업체의 시장 장악을 막고 소규모 경비업체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비업체 자체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으로 지나친 경쟁조절과 허가업무별 통합 운영 등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호텔, 병원, 학교 등 세분화된 전문업체로의 전환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기능별로 취업을 가능케 함으로서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양질의 자원이 민간경비산업에 유입이 되고 전문직업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비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전문화되어, 자체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경비도 경찰과 당당하게 동반자의 지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5) 민간경비측의 적극적 협력방법 홍보전략

국민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협력방법 및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경비측의 적극적, 공격적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전체국민의 일부계층만이 민간경비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협력방법에 대한 홍보는 필수적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마스크, 언론매체, 홍보책자, 스티커 등을 경찰의 조언과 협력을 얻어서 활용·배포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협력방법에 관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⁴³⁾

6) 상호협력체제 구축

한 연구에 의하면 민간경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민간경비직원들은 범죄신고 및 출동시 상호업무협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⁴⁴⁾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그들이 업무범위 내에서 범죄 및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양자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43) 예) "퇴근시 귀중품을 반드시 금고에 넣자"는 내용과 밑에 00경찰서 연락처, 포돌이 마크와 민간경비회사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의 활용.

44) 이상원,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미나(2000.12), p.52.

공식적으로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관할 구역내의 민간 경비회사들과 경찰이 접촉을 공식화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 모임과 회의, 학술세미나, 워커샵 등을 통해 상호간의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정기적인 체육대회, 상호시설 방문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의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민간경비요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 최근 범죄수법, 장비, 법률교육 등의 실시로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ㄱ 기타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협력방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교육기관의 교과목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와 관련되는 과목의 설정으로 양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찰서 상황실과 민간경비회사 관제실 간에 핫라인 설치, 범죄자문센터 공동운영⁴⁵⁾, 책임자 간담회 등의 상호 대응태세의 보완이 필요하다.

VI. 결 론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각종 범죄의 질적·양적인 팽창으로 인해 치안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찰은 업무의 과중, 인력·장비·예산의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제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제도를 통해서 경찰기능을 보완하고 양자가 함께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 하자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맞추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나 주어진 환경 등으로 인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찰의 민간경비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민간경비와 관련된 범죄예방정책의 미흡,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1C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 범죄예방활동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의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역할을 이해시키기 위한 적극적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둘째, 민간경비원도 경찰관들의 동반자라는 의식 전환이 되어야 하며, 셋째,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단위에 민간 경비

45) 이윤근, "각국의 민간경비산업발전과 향후전망", 경호경비연구 창간호(1997.10), p.261.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넷째, 경비협회측의 협력방범Program 개발, 다섯째, 경비업체측의 경비원 자질향상 노력, 영세성 탈피와 전문화를 위한 자율적 노력 여섯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과 상호대응태세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에서도 경찰의 단계별 개혁에서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개혁과제로 나오고 있는 만큼, 민간경비측 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 접근태도와 전문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자의 노력을 기반으로 경찰과 민간경비가 같은 눈 높이에서 마주 볼 수 있을 때 동반자 관계가 확립될 수 있고 경찰의 업무가 더 많이 민간경비업무 영역으로 이관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경찰대학(1999). 비교경찰론. 서울 : 경희종합인쇄.
- 경찰청(2000). 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 강길훈(1999).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박주현(2000). “공안행정의 민간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상원(1999). “미국도시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2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상원(2000). “경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대응연구”, 논문집, 제8집 2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상원(2000).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미나.
- 이윤근(1997). “각국의 민간경비산업 발전과 향후전망,”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윤근(2000).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장대홍(2001). “미국 민간 경비산업의 새로운 경향”, 한국민간경비학회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경비업법
- 경비업법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 Baker Thomas, Ronald D. Hunter, Jeffery P. Rush, Police System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94.
- Burstein Harvey, Introduction to Securi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1994.
- Burstein Harvey, Security : Management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96.

- Hess Kören M. and Henry M. Wroblewski,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St. Paul, MN : West Publishing Co., 1996.
- Hopf Peter S., Handbook of Building Security-Planning and Design,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McGraw Hill Inc., 1979.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of Construction of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of Korea

by Lee, Sang Won

This study presents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provide positive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for clients.

A method of this study, this paper used statistics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This study, an introduction is at the chapter I, a role of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t the Chapter II, the realiti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at the Chapter III, the police service relating with private security and operating realities at the Chapter IV, the problems and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at the Chapter V, and conclusion at the Chapter VI.

In conclusion, It is needed a public information strategy,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guard, establishment of special office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security corporation.